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업무방해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11. 2004고합414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여환섭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이종욱외 12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3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 피고인 1,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, 피고인 3,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자료제출거부로 인한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, 피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, 주식회사 한미은행 및 1998. 12. 31.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의 점, 공소외 4 주식회사에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, 피고인 2에 대한 자료제출거부로 인한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, 피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,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의 점은 각 무죄.

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7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의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.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